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43
----------	-----

2019년 3월 7일
운 영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9.1.28. 박기재 의원 대표발의(찬성자 김소영 의원
외 12명)

나. 회부일자 : 2019.1.31.

다. 상정 일자 :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

- 2019년 3월 7일 상정·의결(수정 가결)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의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의회홈페이지 회의 영상자료가 제공자 중심의 시청에 머무르고 있음.
- 이에, 자료 이용의 효율성 및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회의 영상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누구나 자유롭게 공개된 회의 영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서울시의회의 회의 중계 영상물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(안 제49조의3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참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박노수)

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안은 매 회기 종료 후 서울시의회가 제공하고 있는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근거와 운영방법, 상업적 목적 외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안되었음.

2 회의 중계 영상물 제공 근거 신설(안 제49조3 신설)

-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,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하며(지방자치법 제72조), 중계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서 개최하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는 영상으로 중계방송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(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2).
-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매 회기 종료 후 전자회의록과 영상회의록(본회의는 생중계, 위원회 회의는 녹화 중계)을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재해 오고 있으며, 제285회 임시회부터는 위원회 회의도 생중계할 예정임.
- 현재 전자회의록은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 후 복사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나, 회의 중계 영상물은 열람만 가능할 뿐 복사 또는 내려받기는 어려운 형태로 운영되어 왔음.
- 이에 본 개정안은 회의 중계 영상물에 대해서도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되, 의장으로 하여금 영상 자료의 제작·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하도록 하고, 해당 자료의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등 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고, 이

와 관련해 의회사무처(의사담당관)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함(별첨1 참조).

- 다만, 조문의 오류가 있는 사항을 보완하는 등 일부 체계자구의 수정이 요구됨.

<표-1>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신 설>	<p><u>제49조의3(영상자료의 제공)</u> <u>① 의장은 제49조의2제1항에 규정된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</u> <u>이 경우,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·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.</u> <u>②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</u></p>	<p><u>제49조의3(영상자료의 제공)</u> <u>① (개정안과 같음)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—————.</u></p>

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의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와 위원회 등 회의 중계에 관한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보접근성과 알 권리 보장, 의회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나, 일부 체계자구의 수정 보완이 필요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.

6. 토 론 요 지 : 생략

7. 심 사 결 과 : 수정 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12명 전원 찬성)

8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	관련
번호	343

제안년월일 : 2019년 3월 7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조문의 오류가 있는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‘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’ 를 ‘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’ 로 수정함(안 제49조의3 제2항).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기타사항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9조의3 제2항 중 “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” 를 “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” 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원 안	수정안
<p>제49조의3(영상자료의 제공) ① 의장은 제49조의2제1항에 규정된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,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·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.</p> <p>② <u>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</u>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</p>	<p>제49조의3(영상자료의 제공) ① 의장은 제49조의2제1항에 규정된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,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·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.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</u>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</p>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제49조의3(영상자료의 제공) ① 의장은 제49조의2제1항에 규정된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,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·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49조의3(영상자료의 제공) ① <u>의장은 제49조의2제1항에 규정된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,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·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</u></p>